

의안처리상황표

의안번호	101		
건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자	정형진 의원 외 13명		
제안년월일	2015년	8월	24일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결과	2015년	9월	11일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5년	9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5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구·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정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
----------	-----

발의년월일 : 2015년 8월 24일

발 의 자 : 권영애, 김일영, 김춘례, 박학동,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임태근, 정형진, 진선아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는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구·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 또는 중증장애 등록을 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회사무국장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나. 예산조치

-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9급상당) 1인 채용시 : 2,000만원
- 2) 일반임기제공무원(9급상당) 1인 채용시 : 3,663만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중증장애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 2.“의정활동 보조인”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중증장애로 의정활동이 어려운 의원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 및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 의원이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 의원 1명당 1명의 보조인 배치
2. 이동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3. 본회의장 좌석배치 및 각종 행사장 좌석배치 우선 고려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

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그 의원이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조례에 따라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 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중증장애 의원의 임기 이내로 정하고,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	제 호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사무실			
		핸드폰			
	주소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발생시기	년 월 일				
장애특성					
사용중인 보장구			필요한 보조기구 (필요시 작성)		
보조인력 (☑ 표시)	<input type="checkbox"/> 일반임기제공무원		<input type="checkbox"/>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법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